##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850

발의연월일: 2024. 12. 23.

발 의 자:이종배・김미애・김예지

성일종 • 박형수 • 박덕흠

김성원 · 조배숙 · 엄태영

이종욱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는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 여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단체에서는 국민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대상이 연구비 또는 운영비에 한정되어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단체가 체육시설을 원활히 설립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포함하여 보조하도록 하여 국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법률 제 호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를 "시설비, 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		
에 대한 보조) ① (생 략)	에 대한 보조) ① (현행과 같		
	승)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	②		
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			
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			
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			
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			
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			
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	<u>시설비, 연구비, 그 밖에</u>		
부를 보조한다.	필요한 경비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